



효자동설령탕

등록번호 : 20211133

www.효자동설령탕.com

최초 등록일 : 2021.05.07

최종 등록일 : 2025.05.16

효자동설령탕

정 보 공 개 서

(주)두투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두투미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818호(백석동,동문타워 I)

[대표 전화번호] 1644-0190 [대표 팩스번호] 070-7589-019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21.03.19	2021.03.01	(주)두투미 사업자등록번호 262-87-02010 법인등록번호 110111-7823283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두투미	효자동설령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818호(백석동, 동문타워 I)	
특수관계인 (임원)	(사내이사) 김요섭	대표자 김요섭	대표번호 1644-0190	팩스번호 070-7589-0190
	(감사)유상봉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식회사 블랙오아시스	미트인샐러드 외 1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904호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김요섭	1661-5421	-
	법인등록번호	120111-1156399	사업자등록번호	115-86-02468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위츠	블랙오아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904호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이승호	1661-5421	-
	법인등록번호	285011-0526448	사업자등록번호	514-87-02643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농업회사법인 (주)나눔/ 이승호(사내이사)	천년설령탕 외 3개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259-16, 가,나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이승호	1644-0190	070-8650-0190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효자동설령탕	
상 호	효자동설령탕 00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691,855	1,687,240	4,614	949,226	-399	-385
2022년	1,210,962	890,226	320,736	2,321,485	216,289	216,121
2023년	2,203,965	958,807	1,245,157	4,125,911	330,550	224,450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김요섭	대표	2021.3.~현재	(주)두투미 대표	기업 총괄
		대표	2018.11.~현재	보부상네트웍스 대표	기업 총괄
		대표	2019.4.~현재	농업회사법인(주)가나 안푸드 대표	기업 총괄
		대표	2021.6.~현재	(주)블랙오아시스 대표	기업 총괄
		대표	2023.2~2023.12	(주)위즈 대표	기업 총괄
	유상봉	감사	2023.2~현재	(주)위즈 감사	감사 업무
		감사	2023.8~현재	(주)두투미 감사	감사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12월31일	1	1	13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블랙오아시스	가맹사업 경영	예정	미트 인 샐러드(등록번호: 2021223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블랙오아시스	가맹사업 경영	예정	오리덕애(등록번호: 20231792)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블랙오아시스	가맹사업 경영	2023.03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블랙오아시스(등록번호: 20212235)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위츠	가맹사업 경영	예정	블랙오아시스(등록번호: 20212235)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두투미	가맹사업 경영	2021.04~현재	효자동설령탕(등록번호: 20211133)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이승호	다른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주)나눔]의 사내이사로 재직	2020.08~현재	천년설령탕(등록번호: 2020124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이승호	다른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주)나눔]의 사내이사로 재직	가맹사업 시작 예정	배달중독(등록번호: 20210004)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이승호	다른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주)나눔]의 사내이사로 재직	가맹사업 시작 예정	1st PC방(등록번호: 20212453)이라는 영업표지의 PC방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이승호	다른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주)나눔]의 사내이사로 재직	가맹사업 시작 예정	효자동 원조 순대국(등록번호: 20231158)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임원)	이승호	다른 가맹본부 [농업회사법인 (주)나눔]의 사내이사로 재직	2024.07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회사에 인도함	오리덕애(등록번호: 20231792)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효자동설령탕 (상표권 43류)	가맹점운 영에 한정	출원 2021.03.30. 등록 2022.11.11	출원 4020210065656 등록 4019338250000	박상혁	2032.11.11
 효자동설령탕 (상표권 35류)	가맹점운 영에 한정	출원 2021.03.30. 등록 2022.11.11	출원 4020210065597 등록 4019338210000	박상혁	2032.11.11
 효자동설령탕 (상표권 29류)	가맹점운 영에 한정	출원 2021.03.30. 등록 2022.11.11	출원 4020210065571 등록 4019338230000	박상혁	2032.11.11

※ 당사는 상기 상표권(출원자)로부터 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용권을 득하였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1년 04월 06일

※ 최초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점현황이 없습니다.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전국	효자동설령탕	김요섭	2021.04~2024.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818호(백석동,동문타워 I)
(주)두투미	효자동설령탕	김요섭	2024.07~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818호(백석동,동문타워 I)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효자동설령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설령탕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5	3	21	20	1	41	40	1
서울	3	2	1	5	4	1	7	6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2	2	-
인천	2	1	2	3	3	-	4	4	-
광주	-	-	-	1	1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7	7	-	15	15	-
강원	-	-	-	2	2	-	3	3	-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1	1	-	1	1	-
경남	-	-	-	1	1	-	2	2	-
제주	-	-	-	-	-	-	4	4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6	-	1	-	5
2022년	5	16	-	1	-	20
2023년	20	23	-	3	1	40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블랙 오아시스	미트 인 샐러드	20212234	기타 외식	-/1	-/1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블랙 오아시스	오리덕애	20231792	한식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위즈	블랙 오아시스	20212235	기타 외식	-/-	-/-	-/-
가맹본부	(주)두투미	효자동 설렁탕	20211133	한식	5/3	20/1	40/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의 임원)	농업회사법인 (주)나눔	천년설렁탕	20201248	한식	2/-	1/-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의 임원)	농업회사법인 (주)나눔	배달중독	20210004	기타 외식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의 임원)	농업회사법인 (주)나눔	1st PC방	20212453	PC방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의 임원)	농업회사법인 (주)나눔	효자동 원조 순대국	20231158	한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40	215,166	9,414	982,739	50,528	7,612	359	31곳 산정
서울	6	285,513	16,347	759,150	50,528	64,469	8,524	6곳 산정
부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15	212,413	8,737	982,739	24,568	7,612	359	11곳 산정
강원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공급액 및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신규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 이 안되는 곳은 일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후 1년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 =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3]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3.33%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40개가 아닌 실제 31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사의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0	40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사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243,404	
광고	소계	 (비공개)	243,404	
판촉	소계	 (비공개)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두투미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 험증권 발급 대상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 험증권 발급 대상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시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5,500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 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번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등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급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현금)보증금	3,000
합계	19,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99.0㎡[약30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공사)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66,000	2,200	착수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3.3㎡ 늘어날 때마다 2,200만원 추가부담
간판		7,500				-
가구(테이블/의자)		5,500				
주방시설		17,000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집기비품		5,000				-
POS		-				
키오스크		-				
총계		101,00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초도상품, 철거, 전기증설, 가스, 정화조, 화장실, 외부상하수도, 외장추가, 소방공사, 테라스, 입구외부 파사드 냉난방기 제품비, 냉난방 설치 및 배관비 등

※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반환 기준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전 변심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인테리어 및 기기, 장비 등 시설공사 포함)를 위하여 단계별로 지급된 공사대금(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은 각 단계별 공사가 시작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330만원(VAT포함)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 최소 점포 기준 66㎡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고객결제액 X 2.2%	매월말일	후불로 반환없음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청구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사의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가맹관리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만원, VAT포함), 교육비(550만원, VAT포함), 보증금(300만원, VAT없음)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만원, VAT포함), 교육비(550만원, VAT포함), 보증금(300만원, VAT없음)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가맹본부의 상호·브랜드 등 영업표지가 포함된 간판 및 부착물 등과 가맹본부의 고유한 디자인이나 노하우(지식재산권)가 포함된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제38조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상품 등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제28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단위;원)	비고
	해당없음		-	2023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사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2023년 기준

2) 당사가 당사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

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1.3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설령탕 전문점	효자동설령탕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을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몰 및 종합병원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및 공항의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선정함]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점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효자동설령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효자동설령탕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 업체 명	주소(인터넷주소)	취급 품목
온라인	슬기 생활	https://smartstore.naver.com/lifeofwisdom?NaPm=ct%3Dlft5kmqp%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cb8490ca6f40c0d9d9c71063d7b86bc7b47b567c	효자동설령탕, 효자동갈탕

*상기 유통채널 외에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다른 유통채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3.4%	6.6%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0.0%	2.9%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효자동설령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36조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37조 1항

1.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등과 프로그램비용,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보호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취급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37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6조 [계약 수정 사유]	
○ 이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 및 양도/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행정적실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설령탕 판매점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연중무휴(단, 설, 추석명절 제외) 영업일 준수 단, 귀하가 연속하여 2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문의: 가맹관리팀 귀하가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통상 QSC 관리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각 지역 가맹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효자동설령탕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촉 행사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9조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제조법,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매뉴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일천만원(W1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 잔여 개월 수 X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단,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X 5% 2.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본부의 개설마진을 위약금으로 지급 ③ 아래 내용을 위반한 상대방은 제1항과 제2항과 별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과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까지 ‘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 일천만원(10,000,000원) 지급 2.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금 일천만원(W10,000,000) 지급 3.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무단 사용 시 위반일수 X 금 일십만원(W100,000) 지급 4.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소스 등 자체가공 등 상품(필수품목이나 강제품목 해당)품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위반 건당 금 일백만원(W1,000,000) 지급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의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	제41조

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8일 내외	7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보증보험증권 교부 및 가맹금 수령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 - 가맹금 수령	계약체결 당일	7페이지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8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의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가맹본부	문의: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	가맹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필요시 실시	실비 책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4조 (개시 승인)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2023 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염창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21, 1층(염창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년 9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99,73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1-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명	권장가격
메뉴	판매가
효자동 설렁탕	9,000
효자동설렁탕(특)	11,000
얼큰설렁탕	10,000
얼큰설렁탕(특)	12,000
사골도가니탕	13,000
소머리곰탕	11,000
사골떡만두국	8,000
마구리 갈비탕	11,000
양곰탕	12,000
모듬수육 국밥	8,000
얼큰 모듬수육 국밥	9,000
모듬수육	24,000
소 뼈다귀찜	36,000
한방 소 뼈다귀찜	45,000
사이드메뉴(배달)추가메뉴 품목	판매가
왕만두 고기 (3개)	4,000
왕만두 김치 (3개)	4,000
소불고기 (200g)	9,000
공기밥	1,000
물냉면	8,000
비빔냉면	8,000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

별첨3. 재무제표(2021~2022)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재무제표(2022~2023)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